



(1) 2015년 귀속 연말정산 공제항목 요약

2.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인적공제	기본공제		1명당 150만원	구분	소득요건*	나이요건**
				본인	×	×
				배우자	○	×
				직계존속	○	만 60세 이상
				형제자매	○	만 20세 이하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 (입양자 포함)	○	만 20세 이하
				위탁아동	○	만 18세 미만
				수급자 등	○	×
				* 연간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이하 (근로소득만 있는 자는 총급여액 500만원 이하) ** 장애인의 경우 나이요건 적용하지 않음		
	추가공제	경로우대	1명당 1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만 70세 이상		
장애인		1명당 200만원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			
부녀자		50만원	근로소득금액이 3천만원 이하자인 근로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배우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 · 기본공제대상자가 있는 여성 근로자로서 세대주			
한부모		100만원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기본공제대상인 직계 비속 또는 입양자가 있는 경우 (부녀자 공제와 중복적용 배제)			
연금보험료 공제			전액	근로자 본인의 국민연금보험료·공무원 연금법 등(공적연금관련법)에 따라 부담한 부담금·기여금		
특별 소득공제	보험료	건강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 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노인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료	전액	근로자 본인 명의의 고용보험료		
특별 소득공제	주택 자금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등	원리금 상환액의 40% (연 300만원 한도) ※ 주택마련저축 불입액 공제와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인 근로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금융회사 등으로 부터 차입한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항목	구 분	공제금액· 한도	공 제 요 건
		합하여 연 300만원 한도	총급여 5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 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대부업을 경영하지 아니하는 개인 으로부터 연 1,000분의 25보다 낮은 이자율로 차입한 자금이 아닌 차입금의 원리금상환액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이자상환액 (연 300만원~ 1,800만원 한도)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가(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 주택*(취득당시 기준시가 4억원 이하)을 취득하기 위하여 당해 주택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차입한 장기 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 '14년 이후 차입금부터 국민주택규모 기준 삭제 - 소유권 이전·보존등기일로부터 3월 이내에 차입 - 채무자와 저당권 설정된 주택의 소유자가 동일인일 것 ※ 공제한도 - '15.1.1. 이후 차입분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이고 고정금리 : 1,800만원 15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1,500만원 15년 이상 상환 기타 : 500만원 10년 이상 상환 비거치식 또는 고정금리 : 300만원 - '12.1.1. 이후 차입분 : 500만원(비거치식·고정 금리 대출 : 1,500만원) - '11.12.31. 이전 차입분 : 1,000만원(상환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 '03.12.31. 이전 차입분(상환기간 10년 이상) : 연 600만원(상환기간 15년 이상 : 1,000만원, 상환 기간 30년 이상 : 1,500만원) <주택자금공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주택마련저축을 합하여 종합한도 적용>
그 밖의 소득공제	개인연금저축 소득공제	연 72만원 한도	개인연금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180만원 불입시 연 72만원 공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소득공제	연 300만원 한도	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하는 대표자의 노란우산공제 불입액 공제
	주택마련 저축공제	연 300만원 한도	주택마련저축* 불입액의 40% 공제 -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자 * '14년까지 가입자 중 총급여액 7천만원 초과자 는 종전한도로 '17년까지 공제 가능 - 국민주택규모의 주택(가입당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을 한 채만 소유한 세대의 세대주 (2009.12.31. 이전 가입만 해당) * 주택마련저축 · 주택법에 의한 청약저축(연 납입액 120만원 이하) · 주택청약종합저축(연 납입액 240만원 이하) · 근로자주택마련저축(월 납입액 15만원 이하) ※ 장기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 적용기한('12.12.31.) 만료
그 밖의 소득공제	투자조합출자	출자 또는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벤처기업 등에 투자 시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등 소득공제	투자금액의 10% [30%(2013년), 50%·30%(2014년), 100%*·50%*·30%(2015년):벤처조합·벤처기업 출자] * 1,500만원 이하 ** 5,000만원 이하	출자 또는 투자 후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선택하여 1과세연도에 공제 ※ 공제한도 <table border="1"> <thead> <tr> <th>구분</th> <th>공제한도</th> </tr> </thead> <tbody> <tr> <td>'13년 이전 투자</td> <td>종합소득금액의 40%</td> </tr> <tr> <td>'14년 투자</td> <td>종합소득금액의 50%</td> </tr> <tr> <td>'15년 이후 투자</td> <td>종합소득금액의 50%</td> </tr> </tbody> </table>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구분	공제한도										
'13년 이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40%										
'14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15년 이후 투자	종합소득금액의 50%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 총급여액 25%) × 15%(30%)	- 15% 공제대상 사용금액 · 신용카드 사용금액 - 30% 공제대상 사용금액 · 현금영수증 기재금액 · 직불카드(체크카드), 직불전자지급수단·기명식선불전자지급수단 또는 기명식전자화폐 사용금액 · 전통시장 사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대중교통 이용분(카드, 현금영수증) ※ '15년 상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10% 추가 공제 '15년 하반기 추가공제율사용분 20% - 본인, 배우자 및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비속(소득금액 제한 받으나, 나이제한 없음)의 신용카드 등 사용액 - 300만원과 총급여 20% 중 적은 금액 한도 다만, 전통시장 사용분과 대중교통 이용분은 각각 100만원까지 추가 한도(최대 500만원)								
	우리사주조합 소득공제	연 400만원 한도	우리사주조합원이 우리사주를 취득하기 위하여 우리사주조합에 출연한 금액								
그밖의 소득공제	고용유지중소기업 근로자 소득공제	임금삭감액의 50% (공제한도: 1천만원)	고용유지 중소기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상시 근로자에 대해 근로소득에서 공제 (직전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해당 과세연도의 해당 근로자 연간 임금총액) × 50%								
	목돈 안드는 전세 이자상환액 공제	연 300만원 한도	임차인이 금융기관에 지급한 이자상환액의 40%를 주택 임대인이 공제								
그밖의 소득공제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저축입액의 40% (연 240만원 한도)	가입 시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 5천만원 이하 근로자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납입한 금액(해당 과세기간 8천만원 이하 근로자)								
	소득세 소득공제 종합한도 초과액	2,500만원 한도	특별소득공제 및 그 밖의 소득공제 중 종합한도 적용대상 소득공제액이 2천5백만원 초과시 과세표준에 합산 - 적용대상 : 주택자금공제,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투자조합출자 등(2014년 이후 벤처기업 직접투자분 제외),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	구분	공제금액·한도	공제요건			
세액감면	중소기업 취업자 세액감면	취업일부터 3년간 근로소득세 50%(100%) 감면	<p>우리사주조합 출자금,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p> <p>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연령이 15세 이상 29세 이하(병역근무기간 제외 : 한도 6년)인 사람,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이 중소기업에 '12.1.1. (60세 이상인 사람 또는 장애인의 경우 '14.1.1.) ~ '15.12.31.까지 취업하는 경우 중소기업체에서 받는 급여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취업일부부터 3년간 50%(100%)* 세액감면</p> <p>* 5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4.1.1. 이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 60세 이상인 사람, 장애인</p> <p>* 100% 감면비율 적용대상자 - 2013.12.31. 이전 중소기업에 (재)취업한 29세 이하 청년으로서 해당 중소기업에 계속 근무하는자</p>			
			<table border="1"> <tr> <td>산출세액</td> <td>공제금액</td> </tr> <tr> <td>130만원 이하</td> <td>55%</td> </tr> <tr> <td>130만원 초과</td> <td>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td> </tr> </table> <p><공제한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이 3천3백만원 초과 7천만원 이하 : 74만원 - [(총급여액 - 3천3백만원)×0.008] → 66만원 보다 적은 경우 66만원 · 총급여액이 7천만원 초과 : 66만원 - [(총급여액 - 7천만원)×1/2] → 50만원보다 적은 경우 50만원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산출세액	공제금액					
130만원 이하	55%					
130만원 초과	71만5천원+130만원 초과금액의 30%					
세액공제	자녀 세액 공제	기본공제대상 자녀	-	1명 15만원, 2명 30만원, 3명이상 30만원 + 2명 초과 1명당 30만원		
		6세이하	-	1명을 초과하는 1명당 15만원		
		출생·입양	-	1명당 30만원		
	연금계좌 세액 공제	과학기술인	연금계좌 납입액 (연 700만원 한도, 연금저축은 400만원) × 12%	과학기술인공제회법에 따른 퇴직연금 근로자 납입액		
		퇴직연금	(총급여 55백만원 이하는 15%)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DC형 퇴직연금 · 개인형퇴직연금(IRP) 근로자 납입액		
		연금저축		연금저축계좌 근로자 납입액		
	의료	보장성 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2%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피보험자로 지출한 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보험료 납입액 (100만원 한도) × 15%	근로자가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을 피보험자로 지출한 장애인전용보장성보험의 보험료			
의 료		④ 본인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총급여액 3%를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 - 공제 가능 의료비		

항목	구 분		공제금액· 한도	공 제 요 건						
세액공제	특별 세액 공제	비	㉠ 65세 이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진찰, 치료 등을 위한 의료기관 지출 비용 (미용·성형수술비용 제외) · 치료요양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용 (건강증진 의약품 제외) · 장애인보장구 구입·임차비용 · 시력교정용안경(콘택트렌즈) 구입비용 (1인당 연 50만원 이내 금액) · 보청기 구입비용 · 장기요양급여비 본인 일부 부담금 						
			㉡ 장애인							
			㉢ 난임시술비							
			㉣ 그 외 부양가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료비 공제대상금액 · 본인, 65세이상, 장애인 난임시술비 : 한도 없음 · 그 외 부양가족 : 연 700만원 						
			<table border="1"> <thead> <tr> <th>구 분</th> <th>의료비 공제금액</th> </tr> </thead> <tbody> <tr> <td>㉠<총급여액 3%</td> <td>(가+나+다+라)- (총급여액 3%-㉠)</td> </tr> <tr> <td>㉡>=총급여액 3%</td> <td>(가+나+다+라)+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td> </tr> </tbody> </table>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가+나+다+라)-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가+나+다+라)+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구 분	의료비 공제금액								
	㉠<총급여액 3%	(가+나+다+라)- (총급여액 3%-㉠)								
	㉡>=총급여액 3%	(가+나+다+라)+ 적은금액[(㉠-총급여액 3%), 700만원]								
	※ ㉠, ㉡, ㉢, ㉣ : 나이·소득금액 제한 없으나 생계를 같이하는 부양가족에 해당되어야 함									
특별 세액 공제	교육비	취학전 아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15%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나이제한을 받지 않음 (직계존속은 공제대상아님) 						
		초등학생 중·고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교육비 공제대상금액 · 취학전아동, 초·중·고생 : 1명당 300만원 한도 · 대학생 : 1명당 900만원 한도 							
		대학생								
	근로자 본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교육기관 교육비, 대학·대학원 1학기 이상의 교육과정과 시간제 과정 교육비, 직업능력개발 훈련 수강료							
	장애인 특수 교육비		사회복지시설 등에 기본공제대상자인 장애인의 재활교육을 위해 지급하는 비용 * 이 경우 소득금액 제한 없으며, 직계존속도 공제 가능							
	특별 세액 공제	기부금	정치 자금 기부금	10만원 이하	기부금의 100/110	정당, 후원회, 선거관리위원회에 기부한 금액 (근로자 본인의 정치자금기부금만 공제 가능)				
10만원 초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 소득금액의 100% 						
법정 기부금		법정 기부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이하 : 기부금의 15% 	국가 등에 지출한 기부금						
		지정 기부금 (중·단체 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 3천만원 초과 : 기부금의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제한도 	사회복지·문화 등 공익성을 고려한 지정기부금 단체 중 비종교단체에 지출한 기부금						

항목	구 분		공제금액· 한도	공 제 요 건
		우리시주조 합기부금	· 법정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100%	우리시주조합원이 아닌 근로자가 우리시주조합에 기부하는 기부금
		지정 기부금 (종교단체)	· 우리시주조합기부금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외) : 근로소득금액의 30% · 지정(종교단체) : 근로소득금액의 10%	종교의 보급, 그 밖의 교화를 목적으로 민법 제 32조에 따라 문화체육부장관 또는 지방자치 단체의 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한 비영리법인 (그 소속 단체를 포함)에 기부한 기부금
	표준세액공제		연 13만원	근로자가 특별소득공제, 특별세액공제, 월세액 세액공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 적용 * 정치자금기부금, 우리시주조합기부금은 중복적용 가능
	납세조합공제		납세조합 원천징수 세액의 10%	원천징수 제외대상 근로소득자가 납세조합에 가입하여 매월분의 급여를 원천징수하는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10% 세액공제
	주택차입금 이자상환액 세액공제		이자상환액의 30%	'95.11.1~'97.12.31 기간 중 미분양주택의 취득과 관련하여 '95.11.1이후 국민주택기금 등으로 부터 차입한 대출금 이자상환액을 세액공제
	외국납부 세액공제		외국납부세액	거주자의 근로소득금액에 국외원천소득이 합산되어 있는 국외원천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납부한 세액이 있는 경우 세액공제 ※ 세액공제한도 $\text{근로소득 산출세액} \times \frac{\text{국외근로소득금액}}{\text{근로소득금액}}$ · 한도 초과시 이월하여 세액공제 가능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월세액 지급액 (750만원 한도)의 10%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세대주가 주택 관련 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도 가능)로서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가 국민주택규모의 주택(오피스텔 포함)을 임차하기 위하여 지급하는 월세액 * 임대차계약서상 주소지와 주민등록 등본의 주소지가 같을 것 * 2014년부터 '확정일자' 받을 요건 삭제